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63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서울장학재단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출연의 필요성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라. 주요사업

- 고교 및 대학 분야 장학생 진로활동 학업장려 장학금 지원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직업전문학교 학업활동 장학금 지원사업
- 독립유공자 후손 및 해외 교환학생 파견 장학금 지원사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정책사업에 참여한 우수학생 지원사업
- 멘토링, 서포터즈, 아카데미 등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등

마. 기관개요

- 소재지 :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
- 법인설립 : 2009.1.8.
- 조 직 : 사무국(2부), 정원 13명/ 현원 12명
- 시설규모: 675 m^2 (사무공간, 회의실(3), 창고)

바. 소요예산(안) : 9,735,258천원

사. 산출근거

- 장학사업비 : 8,476,330천원
 - 사무국운영비(인건비, 경비 등) : 1,258,928천원
-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전진수(☎ 2133-3913)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편성안
합 계		9,735,258
장학사업비 소계		8,476,330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3,010,000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2,650,503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360,000
	서울교환학생장학금	315,500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장학금	301,100
	서울꿈길장학금	200,000
	서울선순환인재장학금	50,000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31,800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254,000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650,229
	장학생성장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60,000
	홍보사업비	100,000
	장학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비	493,198
경상운영비 소계		1,258,928
	인건비	604,467
	운영경비(기본경비+성과급)	654,461